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840 발의연월일: 2025. 3. 12.

발 의 자:이수진・위성곤・송재봉

김준혁 • 송옥주 • 김문수

김정호 · 정준호 · 박홍근

민병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항공기 이용이 증가하면서 크고 작은 항공사고도 늘어나고 있음. 특히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참사(이하 "12·29여객기참사"라고 함)로 인하여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큰 피해가 발생하였음. 12·29여객기참사는 기체 결함 가능성뿐만 아니라 방위각시설의 부적정성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, 항공안전을 위한 사회적 인식과 전반적인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을 '항공안전의 날'로 지정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6조의2(항공안전의 날) ① 국가는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 을 항공안전의 날로 정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의 날 행사 등 사업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u><신 설></u>	개 정 안 제6조의2(항공안전의 날) ① 국가 는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 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정한다.
	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 공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 다. ③ 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의 날 행사 등 사업 실시와 관련 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한다.